

1. 개정이유

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정비하고, 인증기준 주요내용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함(안 제1조의2 및 별지 제1호·제1호의2서식 등)
- 나.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주요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(안 제15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여성가족부령 제 호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준수한”을 “준수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청소년단체”를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청소년단체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청소년단체활동”을 “청소년단체의 활동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의 제목 “(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)”을 “(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인증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“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프로그램의 구성, 자원운영 등 활동프로그램의 적정성
2. 지도자의 자격, 역할, 배치 등 지도력의 적정성
3. 공간 및 설비의 확보·관리, 안전관리 계획 등 활동환경의 적정성
4. 숙박형 또는 이동형 활동의 경우 숙박관리, 안전·영양관리인력, 휴식·이동관리 등의 적정성

5. 그 밖에 수련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9조의4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4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66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규제의 재검토)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: 2014년 1월 1일
2.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: 2014년 1월 1일
3.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: 2014년 7월 22일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4일
주최자	상호명(성명)	전화번호	
	소재지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기관(시설) 종류		
	[]청소년수련관 []청소년수련원 []청소년문화의집 []청소년특화시설 []청소년야영장 []유스호스텔 []영리법인 []기타()		
청소년 수련활동	청소년수련활동명*		활동기간
	주요 프로그램 내용		참가인원(총인원)
			1인당 참가비
	주요 이동경로 및 수단		프로그램 형태 []숙박형 []비숙박형
	인증수련활동 여부 []여(인증번호: 제 호) []부		위험도가 높은 활동 []포함 []미포함
	지도인력(총인원)	보험명	보험금액(1인당, 사망시 기준)
	프로그램 위탁 여부 []여 []부		위탁 기관명
	위탁 내용		
변경 사유 및 내용(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)			

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·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〇〇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<신고 시> 1.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2. 주최자·운영자·보조자 명단 3.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 사실 증명서류	<계획변경 시> 1. 변경 내용 관련 서류 (*청소년수련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)	수수료 없 음					
	유의사항							
	운영계획서에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방법을 포함하고,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		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	접수 처리기관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)	→	검토	→	결재	→	신고증명서 교부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

1. 운영 기본정보

주최자(기관)명		활동명	
활동기간	부터	까지	청소년 ()명 장애인청소년 ()명 청소년 외 ()명 총인원 ()명
	[]당일 []단기(2~3일) []중기(4~6일) []장기(7일이상)	참가대상	[] 9세~13세(초등학생 연령대) [] 14세~16세(중학생 연령대) [] 17세~19세(고등학생 연령대) [] 20세~24세 []기타
활동장소	(주소)	숙박장소	(주소)
활동형태	[]고정형 []이동형 []혼합형		
운영목적			
정보공개*	[]홈페이지 []SNS []인쇄물 []게시판 []기타()		

2. 안전 확보

참가자 건강상태	확인방법		확인(예정)일	
활동 안전관리 계획	긴급 후송대책			
	프로그램 진행(운영) 중			
	취침 시(숙박)			
	이동 중(이동형 활동의 경우)			
	휴식시간 운영			
사전 안전교육	구분	청소년대상		지도자대상
	교육(예정)일시			
	교육방법	[]직접교육 []시청각자료		[]직접교육 []시청각자료
	교육내용**			
안전점검 확인	구분	활동장소		숙소
	확인여부	[]여 []부		
	확인내용			
	최근 안전점검일			
	안전점검기관			

3. 프로그램 운영

기자재·장비 확보	종류	확보 형태	확보 현황	확보(예정)일
		[]자체보유 []임대	개, 개	
		[]자체보유 []임대	개, 개	
		[]자체보유 []임대	개, 개	
영양공급	[]도시락 []구내식당 []외부식당 []기타(자체조리 등)			
세부 운영일정	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등 별첨 가능			

* 의무 정보공개 사항 : 프로그램 일정, 참가비, 지도자 자격 및 경력, 인증수련활동 여부, 가입 보험 종류 및 약관, 관련법에 따른 신고·등록·허가 여부, 안전관리 대책 등의 정보

** 음주·흡연행위 금지, 청소년에 대한 폭행 등 학대 금지, 부당한 수수료·금품 수수 금지 등 포함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한꺼번에 신고(이하 이 조에서 “일괄신고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1.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계획서(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)

2. (생 략)
3.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
4. (생 략)
② ~ ⑤ (생 략)

제7조(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 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) 영 제8 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 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 한다.

1. (생 략)
2.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
·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

1. _____
- _____
- _____
- 준수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
- _____
- _____
- _____

2. (헌행과 같음)
- <삭 제>
3. (헌행 제4호와 같음)
- ② ~ ⑤ (헌행과 같음)

제7조(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
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)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청소년단체”라 한다)---
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<u>청소년단체활동</u>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	4. ----- <u>청소년단체의 활동</u> ----- --
제15조의2(<u>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</u>) (생 략)	제15조의2(<u>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인증기준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“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	1. 프로그램의 구성, 자원운영 등 활동프로그램의 적정성
	2. 지도자의 자격, 역할, 배치 등 지도력의 적정성
	3. 공간 및 설비의 확보·관리, 안전관리 계획 등 활동환경의 적정성
	4. 숙박형 또는 이동형 활동의 경우 숙박관리, 안전·영양관리인력, 휴식·이동관리 등의 적정성
	5. 그 밖에 수련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<신 설>	③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여

	<u>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9조의4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
제15조의4(전문인력 요건)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5조의4(전문인력 요건)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	3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66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
4. 5. (생 략)	4. 5. (현행과 같음)
제21조(규제의 재검토)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21조(규제의 재검토)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 시설의 시설기준: 2014년 1월 1일	1.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 시설의 시설기준: 2014년 1월 1일
2.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수련 시설의 운영기준: 2014년 1월 1일	2.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수련 시설의 운영기준: 2014년 1월 1일
3.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	3.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

<u>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</u> <u>종류: 2014년 7월 22일</u> <u>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</u> <u>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</u> <u>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</u> <u>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</u> <u>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</u> <u>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</u> <u>여야 한다.</u> <u>1. 제1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</u> <u>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</u> <u>등</u> <u>2. 제1조의3에 따른 건강상태</u> <u>확인 방법</u> <u>3. ~ 5. 삭제</u>	<u>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</u> <u>종류: 2014년 7월 22일</u>
---	---